#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 사 보 고 서

2026. 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12월 24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4. 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1. 중소기업 대상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근거 마련

개정안은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부과금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부과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4 후단 신설).

[ 개정안 조문대비표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 |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 |

| | |
|---|---|
| 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 다만,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제35조의3에 따른 산정·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35조[1]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

1)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한다.
1.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2. 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3.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간
4.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대기배출부과금의 종류 및 개요 ]**

| 구 분 | 기본부과금 | 초과부과금 |
|---|---|---|
| 정책 목표 | 오염자 부담 원칙 | 배출허용기준 준수 유도 |
| 정책 성격 | 경제적 유인으로<br>자발적 배출억제 유도 | 기준 위반 시 징벌적 비용 부과로<br>배출허용기준 준수 유도 |
| 부과 항목 | (3종)<br>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 (9종)<br>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br>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불소화합물,<br>염화수소, 암모니아, 시안화수소 |
| 부과 대상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br>연간 10톤 이상 사업장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br>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 |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6.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초과부과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문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금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며,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 시점 이전의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환경개선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그 관할 구역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내줄 수 있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2024년 기준 부과된 대기배출부과금은 388억 3,600만원으로, 이 중 356억 7,300만원(징수율 91.9%)이 징수되었음.

[ 연도별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부과액(A) | 16,497 | 20,432 | 36,264 | 36,149 | 38,836 |
| 수납액(B) | 12,886 | 17,813 | 29,372 | 33,640 | 35,673 |
| 징수율(B/A) | 78.1% | 87.2% | 81.0% | 93.1% | 91.9% |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과금 금액으로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총 4,225건의 부과 건 중 100만원을 초과한 부과 건은 949건(22.5%)임.

[ 연도별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건수 ]

(단위 : 건)

| 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전체 건수(A) | 2,453 | 3,696 | 3,893 | 4,172 | 4,225 |
| 100만원 초과 건수(B) | 444 | 807 | 917 | 961 | 949 |
| 비율(B/A) | 18.1% | 21.8% | 23.6% | 23.0% | 22.5% |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안은 분할납부 대상 범위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분할납부 대상의 범위 ]**

| 현 행 | | 개정안 |
|---|---|---|
| ㅇ 천재지변 등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br>ㅇ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br>ㅇ (추 가) | ➜ | ㅇ 천재지변 등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br>ㅇ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br>ㅇ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참고로,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500만원[2]을 초과하는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별도 사유 없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15593호)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분할납부가 가능한 최소 하한액을 5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합허가 대상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0톤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1·2종 사업장)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 략

## 6. 찬반토론 요지

(생 략)

##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8.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 9. 기타사항

없 음